

은행은 채권양도인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

(다함께성장론용)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뒀면 “채권양도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채권양도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하나은행 앞

년 월 일

채권자 겸 성명 : (주)하나은행 (부)지점장 (인)

채권양수인 주소 :

채무자 겸 성명 : (인)

채권양도인 주소 :

인감대조

제1조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채권의 표시"란에 기재한 채권전액을 귀행에 양도하고 귀행앞으로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채권양도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채

근담보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권양도인은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거래(미래채권담보대출), 외상채권담보대출거래,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

제2조 채권추심·변제 충당

은행이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은행은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 1 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4조 채권양도 통지위임

양도인은 금일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는 바,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양수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

제5조 채권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대상채권의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양도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채권양수인이 대상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6조 특약사항

양도채권의 표시

1. 원 인 계 약	년 월 일자 계약
2. 채 권 총 액	금 원
3. 지 급 기 일	채무자가 지정한 지급기일
4. 채 무 자 (구매업체)	
5. 특 기 사 항	“구매업체”와 채권양도인이 약정체결한 납품관련약정서에서 정한 물품 등 (물품명:)을 채권양도인이 “구매업체”에게 공급함으로써 취득하는 현재 및 향후 1년간의 미래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 단, 본 채권양도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서 기재한 대출약정한도가 기한 연장되는 경우에는 현재 및 기한연장된 만기일까지의 외상매출채권을 양도채권으로 한다.

※ 채권양도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본인의 자서확인	소 속		직 위		성명	(인)
----------	-----	--	-----	--	----	-----

채권양도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채권양도란

-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은행 앞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채권을 타인을 위하여 은행에 양도하는 경우,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자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채권양도인이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은행은 양도된 채권 외에 채권양도인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